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구미시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주민생활편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조건(안 제3조, 제4조)

- 지원조건 :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 및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용 시 지원

다. 지원기준 및 제한 등(안 제5조 ~ 제10조)

- 지원기준 : 신청 당시 평방미터당 표준건축비의 80퍼센트 이내
- 지원제한 :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운영·관리 및 기타사항 등(안 제11조, 제12조)

- 운영·관리 : 준공 후 건축물 대장 등재 및 마을회 소유로 등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운영·관리

3. 조 례 안 : 불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불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읍·면·동지역 행정리·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신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의 운영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신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건축물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설비 교체 등의 수리 행위를 말한다.

8. "보조금"이란 건축물의 신축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20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한정한다.

1. 신축 : 읍·면·동지역 하나의 행정리·통 단위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구 유입으로 이용 주민수가 현저히 증가하여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

나.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된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 또는 철도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개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3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경우. 다

만,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3. 증축 : 건립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사용자 증가 등으로 마을회관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주는 경우
4. 리모델링 : 건립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5. 보수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고, 건립연수가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제4조(지원조건)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한다.

1. 신축, 개축은 사업부지 및 건축물이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경우
2. 증축, 리모델링, 보수는 건축물이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제5조(지원기준) ①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마을회 자부담 비율 2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마을회관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 당시 평방미터당 표준건축비의 80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축, 개축 : 2억원
2. 증축, 리모델링 : 5천만원
3. 보수 : 3천만원

③ 마을회관 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조금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및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④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공사는 읍·면·동 편익 사업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장의 실태 파악을 거쳐야 하며 마을회관 이용계획서 및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마을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비 정산서(보조금 집행내용, 증빙자료, 공사 사진 등)

나. 마을회 소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다. 마을회 통장(보조금 전용) 사본 등

제8조(지원제한)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회관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각종 지원을 제한한다.

제9조(우선순위) 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보수
4. 개축, 증축, 리모델링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 가구 수가 많은 마을 순으로 한다.

제10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11조(운영·관리) ① 마을회는 신축, 개축, 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건축물대장 등재 및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제세공과금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자력으로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 자체적으로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미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등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하지 않을 시 보상금은 당초 부담 비율에 따라 구미시에 반환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된 마을회관은 이 조례에 따른 마을회관으로 본다. 이 경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시점은 건축물대장 등재일부터 산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다. 생략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

3.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3. 생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읍·면·동에서 마을회관 신축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마을회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그 성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하므로 소요재정의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새마을과 편익시설계장 박재범 (480-6816)

새마을과 시설 9급 하민정 (480-6819)

소관 실·과		새 마을 과
입 안 자	과 장	박 수 원
	담 당	박 재 범
	담 당 자	하 민 정 (480-6819)